

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1] <개정 2024. 5. 7.>

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(제22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배치기준
1. 상주국가유산감리원	가.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: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나.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: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
2.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	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